

# 임원선거관리규정

1993年	10月	5日	制定
1993年	10月	7日	改正
1996年	12月	5日	改正
2001年	1月	18日	改正
2012年	5月	17日	改正
2017年	1月	13日	改正
2018年	11月	9日	改正
2020年	8月	27日	改正
2020年	11月	25日	改正
2021年	1月	11日	改正
2021年	8月	11日	改正
2021年	11月	9日	改正
2022年	4月	26日	改正
2023年	1月	18日	改正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장 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본회 정관 및 운영규정,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3.1.18. 개정)

**제3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정관 제3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4조(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석부이사장 2인과 4인의 부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수석부이사장과 부이사장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②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요원을 둔다.
- ③ 선거관리 사무 요원은 본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국 정규직원, 입후보자가 추천한 각 2인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는 본회 사무총장이 맡는다.
- ④이사장 및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2023.1.18. 개정)

**제5조(직무)**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2023.1.18. 개정)

### 제6조(위촉)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사무 요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한다.
- ② 위촉된 선거관리 사무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있다.

**제7조(해산 및 업무이관)**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사무 요원은 당해 선거 임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되며, 후속 업무는 본회 사무국에 이관한다.(2023.1.18. 개정)

### 제8조(선거공보의 발행)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여 전 회원에게 배포하고 입후보자의 소견 및 공약사항을 입후보자로부터 1회에 한하여 제출받아 전 회원에게 배포한다.

② 선거공약의 규격, 문안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입후보자의 소견 및 공약사항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한다.

## 제 3 장 선거관리

### 제9조(선거권)

- 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총회 전년도까지 회비를 이사회가 정한 기간 내에 완납한 회원에 한한다.
- ② 지회·지부 대의원은 본회 지회·지부 설립 및 운영규정 제3장 제17조 ⑤항에 의한다.
- ③ 신입회원의 선거권은 임원개선 총회 전전년 12월 말까지 가입한 자에게만 부여한다.
- ④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10조(대의원 명단 제출)

- ① 지회·지부는 대의원 명단을 총회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한 내에 제출이 없는 지회·지부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1조(선거 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 개최일(선거 일자)을 개최 15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 제13조(이사장 후보자등록)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개최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③ 후보자 기호 및 투표용지의 번호는 등록순으로 한다.
- ④ 선거인 명부는 입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 후보자에게 동시에 전달한다. 단, 평일에 한한다.
- ⑤ 이사장 입후보자는 인쇄물 제작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 제〇〇대 이사장 후보자 홍보물 제작-선거관리위원회” 문구를 꼭 기재하여야 한다.(2023.1.18. 개정)

### 제14조(선거 공영자금)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일 천만원의 선거 공영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선거 공영자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으로 보관하며 납부한 선거공영자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한다.
- ③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선거 공영자금 잔액은 본회 회계에 내입한다.(2023.1.18. 개정)

## 제 4 장 선 출

### 제15조(피선거권 및 선출 방법)

- ① 이사장 및 임원의 피선거권은 본회의 회원가입 후 만 3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한다.  
단, 임명직 이사는 예외로 하며, 지회지부 회원(대의원)은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회원(대의원) 또는 지역거주자 중에서 본회 이사장 이외의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2023.1.18. 개정)
- ②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③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임원개선 총회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신임이사장을 포함하여 신임이사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는 대상자를 총회에서 추인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④사퇴한 임원은 당해 임기 내는 다시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단, 공적인 업무로 인한 사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5 장 선 거

**제16조(임시의장)**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는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투표인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장 입구에서 회원 및 지역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감표위원)** 감표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명, 입후보자가 각 2명을 추천하고 추가 인원이 필요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9조(소견발표)

- 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② 소견발표의 순서는 입후보자의 등록 기호 순서로 한다.

### 제20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인쇄한다.
- ②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적인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필요한 경우 전자투표 방식 등으로 선거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 제21조(투표용지 교부)

- ① 투표는 선거관리 사무 요원의 호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실시한다.
- ②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 아래 투표자 본인 확인 서명 후 사무 요원이 교부한다.
- ③ 전자투표 방식의 채택 시, 전자적 투표도 투표용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22조(이사장 투표)

- ① 임시의장은 이사장 투표 개시를 선언하여야 하며 그 이후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 기표란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기표 도구가 비치되어 있을 때는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 ② 기표할 때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투표자 이외는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 접근할 수 없다.
- ③ 투표 마감은 임시의장이 투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한 때까지로 한다.
- ④ 임시의장은 투표 완료를 확인하고 투표 완료를 선언해야 한다.
- ⑤ 임시의장이 투표 완료를 선언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추가로 투표할 수 없다.
- ⑥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2022.4.26.)

### 제23조(이사장 선거 개표)

- ① 임시의장은 이사장 투표 완료를 선언한 후 개표를 선언해야 한다.
- ②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하여 집계표를 작성하여 임시의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기표한 투표용지 및 선거 관계 문서는 봉인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날인 후에 6개월간 본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사장 당선 결정)

- 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 ② 이사장 후보가 단일 후보일 때는 총회에서 추대하여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2022.4.26. 개정)
- ③ 이사장 후보가 복수 이상일 때는 투표자의 다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2022.4.26. 개정)

### 제25조(당선효력)

- ① 이사장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이사장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 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 ② 임기 만료일은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26조(당선증 교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장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7조(선거장의 질서유지)

- ① 선거장에서는 질서유지가 되어야 한다. 의도적인 소란 행위로 임원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의사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 유세 및 투표시행의 방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임시의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임시의장은 소란 행위자에게 두 차례 말로 경고를 하며, 임시의장의 두 차례 경고 후에도 소란행위를 지속하면 임시의장은 소란 행위자들을 퇴장시킨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①항의 경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위원 중 질서유지 책임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선거관리위원은 유사 시를 대비해 질서유지 인력을 대기시킨다.

## 제 6 장 보 칙

제28조(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9조(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